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474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4744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509229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

변론종결 2022. 11. 22.

판결선고 2023. 1. 1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509229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2016. 7.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5,486,9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5,486,9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016. 7.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486,9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위 각 부동산에”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8행의 “이 법원의”를 “을 제22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로, 같은 쪽 제20행의 “앓았던 사실을”을 “앓았고, 원고 외에도 주식회사 U, V 유한회사 등에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로, 같은 쪽 제21행 내지 제4쪽 제1행의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를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로, 같은 쪽 제9, 10행의 “O건물”를 “R건물”로, 같은 쪽 제14행의 “을 제17, 19, 21내지”를 “을 제17, 19,”로, 제5쪽 제15, 16행의 “피고의 기여분 산정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관련한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를 “을 제3 내지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의 기여분 산정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관련한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같은 쪽 제19, 20행의 “별재의”를 “별개의”로, 같은 쪽 제21행의 “상속포기와 동일하다고”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상속포기와 동일하다고”로, 제7쪽 제8행의 “원래대고”를 “원래대로”로, 같은 쪽 제10행 내지 같은 쪽 12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3. 29.까지의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액수는 27,176,432원[= 9,633,757 + (9,633,757 × 15% × 4,431/365), 원 미만 버림]이고,”를 “갑 제6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액수는 2022. 8. 18. 기준 채권액 25,803,710원[= 9,633,757원 + (9,633,757원 × 연 15% × 4,431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 C이 W위원회를 통하여 변제한 1,372,722원] 중 원고가 구하는 25,486,928원이고,”로, 같은 쪽 제14행의 “원고의 상속지분 2/17에”를 “C의 상속지분인 2/17 지분에”로, 같은 쪽 제16행의 “27,176,432원”을 “25,486,928원”으로, 같은 쪽 제21행 내지 제8쪽 제4행을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1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25,486,9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25,486,9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각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C이 W위원회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금액을 10,136,834원으로 조정받고 합의된 변제계획에 따라 위 양수금채무를 변제하고 있으며 위 채무조정결정은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거나 위와 같이 조정된 채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2) 그러나 W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조정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여야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고,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이 사건 소는 원고가 C에 대한 양수금채권 자체를 추심하는 내용의 소가 아니라 강제집행 대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C과 수익자인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조정합의만으로 C이 부담하는 양수금채무의 범위 자체가 변경된다거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제기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¹⁾.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사해행위 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아, 판사 조성필, 판사 이관형

1)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조정합의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점, 채권자가 W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W위원회로부터 채무자의 채무조정신청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22. 7.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C이 채무조정합의에 의하여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위 집행권원을 기초로 피고에 대하여 채무조정 전의 채무금액을 추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